



제 319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 1 차 도시교통위원회

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4. .

도시교통위원회  
전 문 위 원

#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도로조명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,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 사고 위험 구간의 조명 기준을 보완하여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도로조명시설 관련 용어 정의 정비 및 신설 (안 제2조)
- 상위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례 명칭 정비 (안 제3조, 제18조)
- 조명 등급 산정 방식 최신화, 횡단보도 수직면 조도 기준 강화 및 상충구역 조명 기준 신설 (안 제6조)
- 최신 LED 조명기구 한국산업표준(KS) 반영 (안 제9조)
- 별표 및 별지 서식 개편:  
등급 산정표 수식 교정, 독소조항 삭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 신설

## 4. 참고사항

- 부서협의
  -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붙임
 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 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입법예고 결과
  - 예고기간 : 2026. 2. 26. ~ 3. 18.(20일)
  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로 조명 기준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.
-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교통량과 속도 등에 대한 가중치 방식을 부여하여 도로 현장 여건에 맞는 조명 등급을 정하였고,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직면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여 식별을 용이토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.  
또한 안 제9조에는 KS표준 방수·방진 성능을 갖춘 조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여 고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.
- 이제까지 도로 조명시설을 설치·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의 정비와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시설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.

# □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

## - 제2편 조명시설 -

(2024. 12)



**국토교통부**

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

# 제2편 조명시설 편

## 1. 총 칙

### 1.1 목적

본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하여, 합리적인 계획, 설계, 시공 및 유지보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#### 【설 명】

조명시설은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8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속 시설로, 도로 교통의 안전성 증대를 통하여 주·야간의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하고 도로 이용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설치 목적이 있다.

본 지침은 조명시설의 계획, 설계, 설치,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. 조명시설에 대한 휘도·조도 및 균제도, 보수율, 조명률, 평균조도환산계수 등 조명 기준과 조명 설계 지표들에 대한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하여 도로 교통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.

### 1.2 적용 범위

본 지침은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의해 정의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.

본 지침은 「도로법」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.

#### 【설 명】

본 지침은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. 따라서, 도로 관리자는 이를 토대로 도로의 기능, 도로 및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. 본 지침에 적용되는 주요 법,령,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.

- 국제조명위원회(CIE 115 : 2010)
  -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
- 한국산업표준
  - KS A ISO/CIETS22012 빛과 조명－보수율 결정－작업 방식

-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
-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·규칙
-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
-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
-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·규칙
-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, 배전규정
-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 전기공사시공도집
  - 기타 본 지침과 관련된 관계법규·령·규칙·고시·명령·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 되는 제 반 법령

본 지침은 조명시설의 적합한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 실험 조사 등의 연구를 수행한 후,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, 도로 교통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 연구 개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.

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 다른, 특수한 경우에서의 적용은 본 지침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하여 도로 조건에 적합한 조명시설을 개발 적용할 수 있다.

### 1.3 용어의 정의

조명시설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이다.

#### 【설 명】

본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#### 1.3.1 도로 관련 용어

- 고속도로 : 「도로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서,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의 분리가 되고,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 80km/시 이상인 도로
- 자동차 전용도로 : 「도로법」 제48조에 의해 지정되는 도로로서, 일반국도, 주요 지방도 및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이동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자동차 이외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일반도로
- 간선도로 : 전국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로서, 도(道) 상호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주간선도로와 이와 연계되어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간선도로
- 차도 :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
- 차로 :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
- 중앙분리대 :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,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도로 횡단구성 요소이며,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
- 길어깨 :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 시에 이용하기 위하여, 차도에 접속시켜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

- 연결로 : 입체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,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하여 주는 도로
- 도시지역 :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발전추세로 보아 시가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
- 지방지역 : 도시지역 외의 지역
- 시설한계 : 도로상에서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의 공간 확보의 한계
- 교통량(Volume): 도로의 한 지점을 일정 시간에 통과한 차량의 수
- 용량(capacity) : 주어진 도로 조건에서 15분 동안 무리없이 최대 통과할 수 있는 승용차 교통량을 1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
- V/c : 통과 교통량(Volume) 대 용량(capacity)의 비로 정의함
- 서비스수준(Level of Service, LOS) : 통행속도, 통행시간, 통행 자유도,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전 등 도로의 운행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임. 서비스수준은 A~F까지 6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, A수준은 가장 좋은 상태, F수준은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냄
- 차로분리(separation of carriageways) : 해당 구간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와 같은 입체교차 구간
- 교통통제시설 : 도로 사용자의 시각적 작업을 도와주는 교통신호 및 도로망 설계시 구성되는 도로 안내 장치 등을 포함함
- 횡단보도 :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

~ 이하 생략 ~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,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신규 의무 부과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- 제2조(정의) 도로조명시설, 상층구역 등 용어 정비 및 신설
- 제6조(조명 기준) 등급 산정 방식 변경, 횡단보도 수직면 조도 및 상층구역 기준 신설
- 제9조(조명기구) KS 표준(LED) 최신화 및 보호등급(IP65) 기준 마련
- 제18조(점검 및 유지 관리) 인용 자치법규 명칭 현행화(「남양주시 사무위탁 조례」 →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)
- 별표 및 별지의 조명 등급 기준표(별표 1~3 등) 최신화 및 설치 동의서(별지 제2호) 내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 신설

### 4. 작성자

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